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555

발의연월일: 2023. 6. 9.

발 의 자: 강기윤 · 임병헌 · 서범수

김용판 • 이종성 • 서병수

최형두 • 박대수 • 하영제
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노인복지관은 현재 「노인복지법」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어 노인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과 같은 여가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담 및 돌봄, 노년사회화 및 건강지원, 사회참여 등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임.

이에 「노인복지법」을 개정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것임(안 제39조의21 및 제39조의22 신설 등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노인종합복지관

제3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39조의21 및 제39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9조의21(노인종합복지관) ①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1. 상담 및 돌봄 서비스: 노인의 욕구 파악과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 실시,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과 사례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
 - 2. 노년사회화 및 건강지원서비스: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생활지원을 위한 치매예방과 기능회복지원 및 급식지원 서비스 제공, 여가활용을 돕기 위한 평생교육, 취미, 문화·체육 등 지원
 - 3. 사회참여·권익보호 서비스: 노인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자립 할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자원동원 및 조직화사업 수행, 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

- 4. 그 밖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
- ②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9조의22(노인종합복지관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제3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 종합복지관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| 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1. ~ 7. (생 략)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8. 노인종합복지관 |
|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|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 병예방 | <삭 제> |
| 2. ~ 4. (생 략) | 2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제39조의21(노인종합복지관) ① |
| | <u>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지역</u>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 |
| | 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|
| | 다음 각 호 중의 서비스를 제 |
| | 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 |
| | 1. 상담 및 돌봄 서비스: 노인 |
| | 의 욕구 파악과 정보제공을 |
| | 위한 상담 실시, 위기 및 취 |

약노인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과 사례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

- 2. 노년사회화 및 건강지원서비 스: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 생활지원을 위한 치매예방과 기능회복지원 및 급식지원 서 비스 제공, 여가 활용을 돕기 위한 평생교육, 취미, 문화・ 체육 등 지원
- 3. 사회참여·권익보호 서비스: 노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 립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 득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자원 동원 및 조직화사업 수행, 노 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
- 4. 그 밖에 노인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 공
- ②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 제39조의22(노인종합복지관 설치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

있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· 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 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